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35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조항별 검토	8
(1) 법률의 목적	8
(2) 정의 규정	9
(3) 법률의 적용범위 등	11
(4) 대출부담 경감: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13
(5) 대출부담 경감: 장기분할상환	14
(6) 대출부담 경감: 이자 감면 및 채무 감면	16

(7) 대출부담 경감: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19
(8) 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	21
(9) 대출부담 경감: 보증 지원	22
(10) 채무조정의 기본원칙	24
(11) 정보 제공 요청 등	25
(12) 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29
(13) 금융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희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3.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은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5조).

나.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채를 조기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1) 개 요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경기 악화와 더불어 에너지비용 상승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최근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에 받았던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 따라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 소상공인이 처해 있는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별도의 차별화된 법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¹⁾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성과 전망에 대하여 응답자²⁾의 73.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경영성과 악화를 예상하는 이유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에 의한 원가상승’(20.3%)과 함께 ‘부채증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19.3%)이 지적되었음.

이와 함께 강화해야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중복응답)으로는 ‘대환대출·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가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³⁾.

제정안은 본칙 16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적용 범위)에서 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제6조(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제7조(장기분할상환), 제8조(이자 감면), 제9조(대출의 감면), 제10조(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제12조(보증 지원), 제15조(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서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11조(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 제13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14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16조(재원)에서 지원 절차 및 행정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1)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3.1.

2) 2023년 1월, 도소매업, 외식업, 숙박 및 여행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 9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3) 뒤이어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39.1%),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34.8%) 등으로 조사되었음.

(2) 제정안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 기대효과

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안 제6조 및 안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안 제7조 및 안 제10조제1항제3호), 이자 감면(안 제8조 및 안 제10조제1항제4호), 채무의 감면(안 제9조 및 안 제10조제1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항목으로 금융비용(대출원금 및 이자)이 가장 많이(52.2%) 지적되었다는 점, 현재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매우 힘든 수준”이란 응답이 55.0%에 달한다는 점, 대출 현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39.8%(1위)가 최근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꼽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채무의 감면과 같은 대출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할 경우 현재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금융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3.3.

(3) 제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별도입법 필요성

다만, 동 제정안에 대하여는 기존 법체계를 기반으로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제22조의4⁵⁾를 근거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 중에 있어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⁶⁾의 규정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 지원(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수수료)를 규정함.

법무부는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한계 채무자(소상공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정여부에 대하여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조항별 검토

(1) 법률의 목적

안 제1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규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채무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제도,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받기금 운영 중, 그 밖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간이)회생·파산 절차 진행으로 채무 면책 및 경제적 재기도 가능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영 악화 및 부채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파급효과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 법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법률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칙에 법 유효기간을 둘 것 인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2) 정의 규정

안 제2조는 “소상공인”, “방역조치”, “금융기관”, “정책자금”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방역조치”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된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 정 안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4.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
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 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
항에 따라 대출받은 자금
 - 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정부가 이자차
액을 보전하는 자금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다만, 이 중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제4호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는 “소상공인이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⁸⁾에 따라 대출받은 자
금”(이하 “가목의 자금”이라고 함)을, 나목에서는 “소상공인이 금융기
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자금”(이하
“나목의 자금”이라고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
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중 가목의 자금은 정부 재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자금이고, 나목의 자금은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한 민간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한 대출자금으로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중소기업부의 의견이 있음.

즉, 성격이 서로 상이한 자금을 각각 “정책자금”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후의 본칙규정에서 동일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금의 성격을 적절하게 반영하게 어렵게 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

(3) 법률의 적용 범위 등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4조), 이 법 적용 범위를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으로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으로 규정(안 제5조)함.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제 정 안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으로서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중 법률의 적용 범위(안 제5조)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 전체 또는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거나 일정한 대상을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안 제5조 중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의 문안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개선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의 적용 범위(안 제5조)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시행 기간의 대출 이력을 기준으로 특별 지원하는 것은 방역 조치 시행 기간 이후 대출을 받은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출부담 경감: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안 제6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함.

제 정 안
제6조(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지원된 정책자금의 만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경영상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법제화할 경우 제도적으로 당초 상환일정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외에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구체

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할지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이 소상공인의 신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상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가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도 일률적으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대출부담 경감: 장기분할상환

안 제7조는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장기분할상환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함.

제 정 안
제7조(장기분할상환) ①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분할상환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지원된 정책자금의 만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대출을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경영상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분할상환을 법제화할 경우 제도적으로 당초 상환일정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signal)를 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이외에 장기분할상환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할지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이 소상공인의 신청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상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가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도 일률적으로 장기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대출부담 경감: 이자 감면 및 채무 감면

제정안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 감면(안 제8조) 및 채무 감면(안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이자 감면) ① 정부는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이하 “소상공인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출의 감면) ① 정부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지원된 정책자금의 만

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자 감면 및 채무 감면의 법제화로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경영상 어려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안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의 이자 및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⁹⁾¹⁰⁾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됨.

9)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 소상공인정책심의회구성(중기부 제출자료): 중기부 장관(위원장) 등 25명 이내

구성 (25명 이내)	· 위원장 : 중기부 장관
	· 위원 : 차관급 공무원(14명*, 당연직)+ 민간 전문가(위촉직) *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주요기능	· 소상공인 육성 정책, 시행계획, 제도 법령 등의 심의 및 조정

- (위촉직 위원) 최대 10명* 위촉

*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① 주요 협·단체장, 관련기관 대표를 ‘공익 위촉직*’으로 선임(3명)

*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② ‘민간 위촉직’으로 7명을 선정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 3명 이상 포함

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¹¹⁾에서 유사·중복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¹²⁾를 근거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 감면, 채무 감면을 지원 중에 있어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¹³⁾의 규정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 지원(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이미 운용하고 있어 현행 제도와 중복·상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3)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수수료)를 규정함.

(7) 대출부담 경감: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안 제10조는 민간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을 채무자로 하는 보유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를 조정(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상환유예 3. 장기분할상환 4. 이자 감면 5. 채무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지원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채무조정 법제화로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경영상 어려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안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구체적인 채무조정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의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방법과 유사하게 규정¹⁴⁾하고 있음.

다만,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의 문안은 소상공인의 부채를 경감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취지, 안 제10조의 제목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뜻하는 문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안 제10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¹⁵⁾의 규정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 지원(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이미 운용하고 있어 현행 제도와 중복·상충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한계 채무자(소상공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¹⁶⁾되고 있어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함.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5)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수수료)를 규정함.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간이)회생·파산 절차 진행으로 채무 면책 및 경제적 재기도 가능

(8) 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

안 제11조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금융 지원을 신청하고(안 제11조제1항), 금융 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규모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하며(안 제11조제2항), 이러한 금융 지원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11조제3항)함.

제 정 안	
제11조(금융지원의 신청 및 절차)	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 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 지원의 업무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¹⁷⁾의 소상공인 관

17) 소상공인정책심의회구성(중기부 제출자료): 중기부 장관(위원장) 등 25명 이내

구성 (25명 이내)	· 위원장 : 중기부 장관
	· 위원 : 차관급 공무원(14명*, 당연직)+ 민간 전문가(위촉직) *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주요기능	· 소상공인 육성 정책, 시행계획, 제도 법령 등의 심의 및 조정

- (위촉직 위원) 최대 10명* 위촉

*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① 주요 협·단체장, 관련기관 대표를 ‘공익 위촉직*’으로 선임(3명)

런 행정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이자 감면 및 채무 감면의 경우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소상공인 업계, 금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 회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¹⁸⁾이며,

금융위원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지원 대상 및 그 규모를 제3자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법무부는 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

(9) 대출부담 경감: 보증 지원

안 제12조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급보증을 지원할 수

*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② '민간 위촉직'으로 7명을 선정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 3명 이상 포함

18) 일례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아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함.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보증 지원) ① 정부는 제2조제3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 2.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의 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지원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가 점차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급보증의 법제화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이 저금리로의 대환 지원이 확산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경영상 어려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증가하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본재산 축소 등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는 금리부담 완화라는 목적과 지원대상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제도를 통해 지원하려는 내용의 경우 다소 불분명하면서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채무조정 기본원칙

안 제13조는 채무조정이 소상공인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채무조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의 용어는 다른 조문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와 통일된 하나의 용어로 그 문안을 수정하거나,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본칙의 조문 배치 순서와 관련하여 채무조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조문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규정보다 앞 순서로 조문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정보 제공 요청 등

안 제14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소상공인의 인적사항, 과세정보 등을, 안 제14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소상공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4조(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소상공인의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 정 안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

제 정 안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전적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도 일부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¹⁹⁾에서 급부 행정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한편, 금융위원회는 안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의 경우 그 의미가 월납입 보험료가 아닌 기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의미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집중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20)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그 근거 조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국세청은 안 제14조제1항제2호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료의 제공이 불가하고, 예외적인 사유 중에서도 급부·지원의 자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세기본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안 제14조제5항은 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6항은 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7항은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8항은 하위법령에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12) 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제1항은 채무가 없거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만기 전에 조기상환한 경우 정부가 이자액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채무상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정안은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안 제6조), 장기분할상환(안 제7조)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대출부담 경감조치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균형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15조제1항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이자액 일부 환급 역시 정부의 의무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과 같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할지 또는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를 감안하여 재량사항(∼할 수 있다)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5조제2항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지출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추가지출의 재원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안 제16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이 법에 따른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안 제16조에 안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항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의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안 제6조), 장기분할상환(안 제7조)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를 조기에 상환하였다는 사유로 이자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것은 중복지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임.

(13) 금융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 제16조는 이 법에 따른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6조(재원)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금융지원 및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정안과 같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안 제6조), 장기분할상환(안 제7조), 이자 감면(안 제8조), 대출의 감면(안 제9조),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 제10조)이 이루어질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손실은 불가피함. 이에 제정안은 이러한 민간 금융기관의 손실보전비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안 제6조), 장기분할상환(안 제7조), 이자 감면(안 제8조), 대출의 감면(안 제9조),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안 제10조)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와 연계하여 안 제16조 신설 여부를 논의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과 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금융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²¹⁾의 개정 여부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3

21)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20조(재원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근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